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확대 〉

■ 조계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232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확대(안 제14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10.

다. 회 부 일 : 2026. 4.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의 토대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확대(안 제14조)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한국수어를 홍보·교육하는 등 한국수어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올바른 한국수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u>홍보하는</u>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신설> ②·③ (생략)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 공공-----~~ ~~-----홍보·교육하는-----~~ ~~-----~~ .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한국수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에-----~~ ~~-----~~ . ⑥ 제3항에 ~~-----~~ ~~-----제4항에-~~

현행	개정안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행법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어기본법」²⁾은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1)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국민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는 등 한국수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사용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한국수어 관련 법인·단체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어기본법」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점자법」

제14조(점자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들의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한국수화언어법」은 이에 비하여 관련 규정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 대중매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에게 한국수어를 홍보·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올바른 한국수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규정을 「국어기본법」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을 보다 충실히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기본법」 및 「점자법」과의 체계를 맞추어 일관적인 언어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9